

의안번호	제 388 호
의 결 년 월 일	2001. 2. . (제 184 회)

충청북도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

제 출 자	충청북도교육감
제출년월일	2001. 2. .

충청북도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

의안 번호	388
----------	-----

제출년월일 : 2001. 2. .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관 련 부 서 : 초 등 교 육 과

□ 제정사유

학교 교육활동 관련 분쟁의 단위학교별 자율적·교육적 해결을 도모함으로써 학생이 보호되고 교권이 존중되는 학교건설로 교원들이 안심하고 교직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자 함.

□ 주요골자

-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학교에서 교육활동중 발생하는 교원과 관련된 분쟁사안을 심의·조정·권고(안 제2조)
 1.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교원과 학부모간에 발생한 분쟁
 2. 학생안전사고에 대한 추가보상 등을 요구하여 일어난 분쟁
 3. 교권보호·존중에 위해가 되거나 위해 우려가 있는 사항
- 위원회 구성 및 위원의 의무(안 제3조)
- 분쟁조정 신청 및 회의개최(안 제6조 내지 제7조)
- 위원의 제척, 심의등 결과처리(안 제8조 내지 제9조)
- 교육청의 지원(안 제11조)
 1. 교육감 및 교육장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지원
 2. 교육감은 위원회에서 심의 등을 한 사항에 대한 지원 및 필요한 조치를 함

□ 제정근거

- 교원예우에관한규정 제6조(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운영)
-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2조(교원에 대한 예우)
-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5조(학교안전사고로부터의 보호)

□ 조례안 : 붙임

□ 참고사항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충청북도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

충청북도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교원예우에관한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 공립학교의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등) ①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학교이하의 각급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에서 교육활동중 발생하는 교원(당해 학교의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분쟁사안을 심의·조정·권고(이하 “심의등”이라 한다)한다.

1. 학생생활지도등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교원과 학부모간에 발생한 분쟁
2. 학생안전사고에 대해 학부모등 보호자가 학교안전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의 보상액등에 동의하지 아니하고 동 사고 관련 교원에게 추가보상등을 요구하여 일어난 분쟁

3. 기타 교원예우 및 교권보호·존중에 위해가 되거나 위해의 우려가 있는 사항

②위원회는 분쟁에 관한 심의등을 함에 있어 관련 교원·학부모·학생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사실확인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위원회가 학생 안전사고 관련 분쟁사안에 관한 심의등을 하기 위하여 경제적·법률적 전문지식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제회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제회는 임·직원의 회의 참석, 고문변호사의 조언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3조 (위원회의 구성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②위원은 당해 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중 동 위원회가 추천하는 교원위원·학부모위원·지역위원 각 1인을 학교장이 위촉한다.

③학교장은 필요시 법률 또는 행정 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자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하는 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야 한다.

제4조 (위원장)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위원의 의무) ①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서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위원은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③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 (분쟁조정 신청) 분쟁에 관련된 교원 또는 학부모는 위원장 또는 학교장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분쟁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제7조 (회의개최등) ①회의는 분쟁조정 신청이 있을 때 개최한다.

②분쟁조정신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은 신속히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늦어도 신청이 있는 날부터 7일이내에 개최한다.

③회의의 소집통지는 위원장이 위원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하되, 개최일 3일 이전에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사안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 (위원의 제척) 위원이 분쟁의 당사자가 된 경우에는 당해 사안의 심의등에 위원의 자격으로 참여할 수 없다.

제9조 (심의등 결과의 처리)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등의 결과를 관련 당사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②당사자는 위원회의 심의등의 결과를 존중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심의등의 결과, 보상해결이 필요하거나 당해 교원을 위한 소송대행 기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교장으로 하여금 공제회에 이를 신청하게 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분쟁사안중 교원에 대한 협박·폭행·폭언등으로 당해 교원 또는 학교교육에 과중한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학교장으로 하여금 관련자를 사법기관에 고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⑤위원회는 분쟁사안중 학생에 대한 폭력등 학생인권 침해의 정도가 범죄수준에 이를 정도로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학교장으로 하여금 당해 교원의 징계외결등 인사조치를 요청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0조 (간사) 위원회의 회의기록등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교직원중에서 학교장이 지명하는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

제11조 (교육청의 지원) ①교육감 및 교육장은 위원회가 그 설치 취지 및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②교육감은 위원회에서 심의등을 한 사항에 대한 공제회의 경제적·법률적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공제회 기금 조성을 지원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제12조 (충청북도공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의 준용) 위원회의 위원의 임기, 위원의 겸직허가, 위원의 자격상실, 회의의 운영등에 관하여 본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충청북도공립학교운영위원회의설치·운영에관한조례를 준용한다.

제13조 (시행규정) 위원회의 구성·운영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조례가 정하는 범위안에서 학교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최초의 위원 임기만료) 등 조례에 의하여 최초로 구성된 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의 임기와 같이 한다.

③(학교운영위원회 미구성 학교에 대한 경과 조치) 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각급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자격이 있는 차등에서 제3조의 구성방법에 의하여 위촉한다.

관계법령 발췌서

□ 교원에우에관한규정 제6조

○ 제6조(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 ① 각급학교에서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이 있는 경우 그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각급학교에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각급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에서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기 이전에 당사자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야 한다.
- ③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은 학식과 덕망이 높은 자 중에서 각급학교의 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 ④ 기타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규칙으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 및 도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학교규칙으로,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각각 정한다.

□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 제2조(교원에 대한 예우)

-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는 교원이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높은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는 교원이 학생에 대한교육과 지도를 함에 있어서 그 권위가 존중되도록 특별히 배려하여야 한다.

○ 제5조(학교안전사고로부터의 보호)

- ① 각급 학교 교육시설의 설치·관리 및 교육활동 중에 발생하는 사고로부터 교원 및 학생을 보호함으로써 교원의 직무수행의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학교안전관리공제회를 설립·운영한다.